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8
------------	-----

제출년월일 : 2004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하고 의결을 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도록 함(안 제9조)

### 3. 자치법규안 : 붙임

### 4. 신구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발췌 1부

##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주시세”를 “영주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무과장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무과장, 주택지적과장과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시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 ⑥시세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 한다.
- ⑧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대비표

【영주시 세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세의 부과 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주시세(이하 "시 세"라 한다)..... .....
제8조(파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생략)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신설>  ④~⑥(생략)	제8조(파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②(현 행과 같음) ③..... .....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임기과간으로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제9조(식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 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 위 원회를 둈다.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 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서 협선하며, 위원 은 세무과장, 주택지적과장(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 한한다)과 시행규칙 제3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식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 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과세표준심 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에서 협선하 며, 위원은 세무과장과 지방세법시행규 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에서 협선하 며, 위원은 세무과장, 주택지적과장과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워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시세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워으로 구성 운영한다.
⑥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세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위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⑧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워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⑨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관련 법령(발췌)

### □ 지방세법

第77條 (決定등) ① 第73條 및 第74條의 规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그 申請 · 請求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地方稅審議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決定을 하고 申請人 또는 請求人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決定書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申請 · 請求期間이 경과하였거나 補正期間내에 필요한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申請 · 請求를 却下하는 決定
2.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申請 · 請求를 棄却하는 決定
3.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申請 · 請求의 目的이 된 처분의 取消 · 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決定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決定은 당해 處分廳을 기속한다.  
③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處分廳은 決定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地方稅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11條 (課稅標準)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申告價額의 표시가 없거나 그 申告價額이 다음 각號에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1. 土地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 · 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规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決定告示한 課稅標準額 適用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價額
2. 土地외의 課稅對象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去來價格, 輸入價格, 新築 · 建造 · 製造價格 등을 참작하여 정한 基準價格에 종류 · 構造 · 用途 · 經過年數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對象別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月 1일 현재의 價額. 다만, 時價標準額이 결정되지 아니한 課稅對象의 경우에는 納稅義務成立日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價額을 時價標準額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時價標準額이 基準價格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時價標準額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時價標準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課稅標準審議委員會를 둔다. <신설 2000.12.29>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稅課稅標準審議委員會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敘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삭제 <1999.12.31>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과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81조의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1998.7.23>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1.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